

2022년도 임시대의원총회

회의개요

- 일시: 2022. 5. 17.(화) 16:01(개회)~17:10(폐회)
- 장소: 서울올림픽파크텔 4층 베를린 홀(서울특별시 송파구)
- 출석: 재적 대의원 20명 중 13명 출석
 - 의 장: 박범규(회장)
 - 대의원: 하영재(부산), 홍선표(대구), 유정인(광주), 남성우(경기), 김순교(강원), 최철회(충북), 김우현(충남), 진효근(전북), 이영륜(전남), 김창수(경북), 한대승(제주), 이 준(J/24), 서원석(카이트보딩)
 - 다. 기 타: 한재현(행정감사)
- 상정안건
 - 보고사항
 - 제20대 대한요트협회장선거 결과 및 인준 접수
 - 임원 사임 및 보선 결과
 - 심의사항
 - 임원 선임

논의결과(주요내용)

(개회선언: 16시 03분)

□ 전차 회의록

- 회의 개요
 - 일시: 2021. 09. 03.(금) 16:29(개회) ~ 17:17(폐회)
 - 장소: 비대면 화상회의(ZOOM)
 - 출석: 재적 대의원 20명 중 11명 출석
 - 의 장: 회장 박기철
 - 대의원: 서울(박세철), 대구(정주동), 광주(이철훈), 경기(남성우), 강원(김순교), 충남(백기현), 전남(강병석), 경남(노성진), 제주(한재현), J24(박성규), 카이트보딩(서원석)
- 회의 결과
 - 보고사항
 - 임원 선임 결과: 원안 접수

나) 2021년도 사업 계획: 원안 접수

다) 2021년도 예산: 원안 접수

라) 각종 특별기구 설치: 원안 접수

2) 심의사항

가) 2020년도 결산: 원안 의결

나) 감사 선임: 제주도요트협회 한재현 회장을 행정감사로 김민성 공인회계사를 회계감사로 선임

3) 기타사항

가) 기명날인 대의원 지명: 서울 박세철 회장

나) 기타의견

(1) 요트 규정이 어선 규정과 맞물려 있어 규정의 수정 검토 필요

(2) 2022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파리 올림픽에 정식 종목이 되었는데, 전국체전에 카이트가 빨리 들어가 각 시도에 팀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람

(3) 대한요트협회장으로 박기철 회장님이 이번에 당선되셨는데 요트를 사랑하고 요트를 잘 아시니까 활발하게 활동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람.

다. 참석자 주요 발언

- 000대의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경영정보공시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3차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정기총회가 의결되었고 일정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기총회를 하기 전에 의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를 하지 않고 임시회의를 소집한 임시총회를 소집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조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경영정보공시에는 지난 이사회에서 분명히 정기총회를 하라고 날짜까지 명시해서 공지를 했거든요? 의결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의견을 조금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 의 장: 이 부분은 우리 사회자가 다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사회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안건이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22-3차 이사회 시에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중 임원의 선출, 보선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임원 선출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 협회의장이신 회장님께서 집행부 구성의 중요성이나 긴급성을 요하셨기 때문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명 드립니다.
- 000대의원: 사회자께서 설명 해주신 대로 임원 선임 안을 의결하면, 지난 정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계획, 결산 관련된 사항에 지금 임원 선임 요거만 붙어서 다음 총회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정기 이사회에서 심의를 했잖아요? 정기총회에서 다룰 안건들을.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 다. 해놓은 상태인데, 임원 선임에 대해 의결을 하면 그 사항만 추가돼서 정기총회를 그대로 여는 건지 그걸 한 번 여쭙보고 싶네요. 아니면 뭐 사업계획 내지는 전반적인 협회 사업의 어떤 수정이 불가한 건지?

- 의 장: 수정 가능합니다.
- 000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를 한다 그런다면 지난 3차 이사회에서 통과된 안건과 플러스 이거만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 집행부가 구성되면 3차 이사회에서 의결됐던 총회에 관련된 안건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안건이 상정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거 같거든요?
- 의 장: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대한요트협회에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없었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했던 것 절대 무시를 하지 않고 충분히 수렴하고 또 추가할 거 있으면 추가하고 뺄 거 있으면 빼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시죠.” 하는 소리 들림.
- 의 장: 안건 심의에 앞서 전차 회의록 초록 낭독이 있겠습니다. 사회자는 초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 사회자: 전차 회의록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 000대의원: 전차 회의록 결과는 사전에 아마 오신 오늘 대의원님들 다 받아 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의만 신청 받고 원안 통과를 요청 드립니다.
- 의 장: 받아들여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보고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네,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소리 들림.

라. 논의 결론: 원안 접수

□ 보고사항

1. 제20대 대한요트협회장선거 결과 및 인준 접수

가. 주요 내용

1) 제20대 회장보궐선거 실시 배경

가) 제19대 대한요트협회 박기철 회장이 2022. 1. 3.(월) 사임서를 제출하여 회장보궐선거 실시

직 위	성 명	사유	사임서 제출 일자
회장	박기철	일신상의 사유	2022. 1. 3.(월)

대한요트협회 정관
<p>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 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p>

나) 2022년 제1차 이사회(2022. 1. 11.)의 동의로 선거관리위원회(7명) 구성하여 선거 실시

2) 제20대 대한요트협회장선거 실시 결과

가) 일시: 2022. 2. 10.(목) 13:30 - 16:20

나) 장소: 스마트워크센터 2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84, 베스트빌딩)

다) 개표 결과

기호	후보자 성명	유효			무효	결과
		총 투표수	득표수	득표율		
1	장 대 식	91	33	36.3%	0	당선
2	박 범 규		58	63.7%		

3) 회장 인준사항

가) 인준대상: 박범규 회장

나) 임 기: 인준일로부터 2025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

※ 관련근거: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5조(임원의 임기)제1항 및 제3항, 제54조(규정의 해석)제2항

다) 인 준 일: 2022. 2. 23.

라) 관련근거: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1375(2022.02.23.) 「대한요트협회 임원(회장) 인준 통보」

나. 참석자 주요 발언

- 의 장: 사회자는 보고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자: 보고사항1 제20대...
 - 000대의원: 이것도 보고사항을 전체로 통과를 이의 신청을 받고, 없으면 통과하는 것으로.
 - 의 장: 보고사항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람.
- ⇒ “없습니다.” 하는 소리 들림.

다. 논의 결론: 원안 접수

2. 임원 사임 및 보선 결과

가. 주요 내용

1) 임원 사임 (2022.1.11.까지)

연 번	직 위	성 명	사 유	접수 일자
1	이 사	최 성 은	사임서 제출	2021. 10. 07.(목)
2	이 사	주 숙 례	사임서 제출	2021. 10. 12.(화)
3	이 사	이 문 관	사임서 제출	2022. 1. 10.(월)
4	이 사	전 지 은	사임서 제출	
5	이 사	이 천 재	사임서 제출	
6	이 사	김 수 범	사임서 제출	
7	이 사	이 광 원	사임서 제출	
8	이 사	이 동 우	사임서 제출	2022. 1. 11.(화)
9	이 사	정 애 리	사임서 제출	

2) 임원 결원에 대한 보선 (2022.1월)

연 번	직 위	성 명	소속 및 직업	근거
1	이 사	박동희	요진건설산업/ 비서실장	2022-1차 이사회 (2022.01.11.(화))
2	이 사	최기원	엠1971마린(주) / 대표이사	2022-1차 이사회 (2022.01.11.(화))
3	이 사	안광석	강릉시청 요트부 / 감독	2022-1차 이사회 (2022.01.11.(화))

3) 임원 사임 (2022.5.09.까지)

연 번	직 위	성 명	사 유	접수 일자
1	부회장	정 연 재	사임서 제출	2022. 4. 12.(화)
2	부회장	김 우 현	사임서 제출	2022. 4. 19.(화)
3	이 사	권 기 성	사임서 제출	2022. 4. 19.(화)
4	이 사	김 민 철	사임서 제출	2022. 4. 19.(화)
5	이 사	김 태 정	사임서 제출	2022. 4. 19.(화)
6	이 사	김 형 기	사임서 제출	2022. 4. 19.(화)
7	이 사	노 광 민	사임서 제출	2022. 4. 22.(금)
8	이 사	박 동 희	사임서 제출	2022. 4. 19.(화)
9	이 사	박 승 현	사임서 제출	2022. 4. 19.(화)
10	이 사	신 경 구	사임서 제출	2022. 4. 19.(화)
11	이 사	안 광 석	사임서 제출	2022. 4. 19.(화)
12	이 사	이 재 빈	사임서 제출	2022. 4. 19.(화)
13	이 사	이 재 철	사임서 제출	2022. 4. 19.(화)
14	이 사	임 중 훈	사임서 제출	2022. 4. 19.(화)
15	이 사	최 기 원	사임서 제출	2022. 4. 19.(화)

4) 임원 현황 (2022.05.09. 현재)

가) 요약

구분	계	이사	감사
정원	31명	15명 이상 29명 이하 (회장, 부회장(7명 이하) 포함)	2명 (행정1, 회계1)
현재	5명	3명 (회장, 부회장 0, 이사 2)	2명 (행정1, 회계1)

나) 임원 명단

연번	직 위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1	회장	박범규	남	(주)위드보에셋 / 회장
2	이사	채수동	남	(주) 켈리더마리나 / 대표이사
3	이사	홍유정	여	(주)디스이즈엔지니어링 / 대표이사
4	행정감사	한재현	남	제주특별자치도요트협회 / 회장
5	회계감사	김민성	남	신한회계법인 / 이사 (공인회계사)

나. 참석자 발언: 없음.

다. 논의 결론: 원안 접수

□ 심의사항

1. 임원 선임

가. 주요 내용

1) 임원 구성 관련 근거

대한요트협회 정관
<p>제18조(임원) ①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지역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씩 포함) 3. <u>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u>(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협회 정관 개정 중으로 체육회 규정 적용
<p>제22조(임원의 선임) ① 회원종목단체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정한다.</p> <p>③ 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가대표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국가대표가 없는 종목은 선수출신자로 이를 대신하며, 기존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 중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중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4.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6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대한요트협회 정관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임원 명단임원 명단 (2022. 5. 9. 현재)

#	직 위	성 명	소속 및 직위	성별	비고
1	회장	박범규	위드보엣셋 / 대표	남	대한체육회 인준(2022.2.23.)
2	이사	채수동	(주) 켈리더마리나 / 대표이사	남	
3	이사	홍유정	디스이즈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대표이사	여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행정감사	한재현	제주특별자치도요트협회 / 회장	남	2023년도 정기총회일까지
31	회계감사	김민성	신한회계법인 / 이사 (공인회계사)	남	2023년도 정기총회일까지

나. 참석자 주요 발언

- 000대의원: 기존에 있던 이사님들이 다 사임을 하시고 지금 이사들 중 채수동 이사, 홍유정 이사님만 되어 있는데. 정관을 제가 기억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5명 이하면 임원이 이사회가 해산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이사회가 해산이 되었으면 자동 사퇴가 되는 건가요? 이사의 직권은 유지가 되는 건가요? 사회자 혹시 내용 답변 가능합니까?
- 사회자: 지금 000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대한체육회나 이런 쪽 정관이랑 지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 거고,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했을 때는 이사회 기능 상실하였다 일단 그렇게까지 지금 판단을 한 상황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해임 건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계신 대의원 분들 전원이 찬성을 하시거나 동의를 하시면 다시 안전에 부치는 등의 방식은 필요할 거 같습니다.
- 000대의원: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나머지 분들은 다 사임을 해서 회장님한테 사퇴서를 제출을 했고요 이 두 분들은 사퇴서를 안 내어 가지고 지금 이사로서 예들 들어서 살아있다고 하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오늘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대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이 부분을 해임 안을 안전으로 상정을 해서 해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회장님한테 위임을 하든 아니면 제2안, 제3의 안이 나와서 논의를 하든 그렇게 하는 걸로 제안을 좀 드립니다.
- 의 장: 아직 이거는 좀 법적인 어떠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 000대의원: 가장 중요한 거는 해임에 대한 거는 규정을 보셔가지고 대의원들이 몇 명이 참석해야 되고 몇 명이 발의, 승인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 가장 중요한 거는 충남 대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가 해산이 됐는데 사표를 안 낸 이사가 아직 이사 자격이 있는냐 없느냐를 대한체육회에 한 번 자문을 질의를 자문을 구해 보시고, 그렇게 한 다음 그 사람들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잘라 가지고, 새로운 임원 구성하는데 깨끗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 000대의원: 맞습니다.
- 000대의원: 그러면 저희도 그거에 동의하고 앞으로 그거에 대해 잠깐 정회를 하시면 체육회에 질의를 자문을 한 번 구해보시고 한 번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000대의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질의 해석을 받으려면.
- 사회자: 방금 직원을 통해서 저희 협회 정관을 통해서 봤더니 해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있지는 않은 거 같고요,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에 문의를 했을 때도 나머지 지금 살아계신 이사 두 분이 저희가 이사회 기능을 상실한 것이지 그 분이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의 그런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000대의원: 그러면 임원 해임에 대한 규정을 한 번 보셔가지고 대의원들한테...
- 000대의원: 이분들 사실은 요트계 쪽에 제가 전에 바로 전 집행부의 실무부회장을 했을 때 일 년여 동안 하면서 이 두 분들을 딱 한 번 봤어요. 한 번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뭐 사퇴를 안 하고 지금 버티는 이유가 제가 개인적인 비즈니스 상으로 있는 이유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만일에 그게 가능하다면 이분들 오늘 사퇴 안 해임 안을 여건이 돼서 충족이 돼서 한다고 하면 사임을 해임 안을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건으로 임원 보선의 건을 좀 다루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 000직원: 지금 앞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의결에 앞서 추가가 된 겁니다, 19년도 11월 18일에.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는 게 있습니다. 추가가 됐습니다.
- 의 장: 제가 아는 것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저도 그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대의원총회라고 해도 아마 그건 대한체육회나 이런 부분에 길을 확인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또 그분들한테도 어떤 소명의 기회가 뭐 한 일주일이었던 주는 건 그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 000대의원: 여기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총회를 열어서 해임을 통보하는 것보다는 다음 총회 할 때 그분들이 어차피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 000대의원: 발의를 해서 소명기회를 주자는 거죠. 그리고 다음 총회 때 소명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한테 소명기회를 주자는 거죠.
- 의 장: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소명의 절차 그대로 소명 기회를 주고 다음 대의원총회 때 발의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000대의원: 10분만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확인도 좀 해야 되고...
- 의 장: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재개)

- 의 장: 임원 선임, 해임에 관해서는 심의나 법적 검토해서 다음 대의원총회로 넘기는 걸로 하고요 일단 여기 출석하신 대의원님들께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 “네, 재청합니다.” 하는 소리 들림.
- 의 장: 그러면 아까 저기 말씀드렸던 임원 선임에 대해서 그쪽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대의원: 저는 박범규 회장님한테 임원 선임에 대한 위임을 드리는 걸 제의합니다.

- ⇒ “예, 동의합니다.” 하는 소리 들림.
- 의 장: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 ⇒ “예.” 하는 소리 들림.
- 의 장: 임원 선임 권한에 대해서 반대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 ⇒ “없습니다.” 하는 소리 들림.
- 의 장: 그럼 임원 선임 권한을 저에게 위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책임자를 선임하여 다음 총회 때 공평하게 선임해서 다음 총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논의 결론: 임원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함.

□ 기타사항

- 의 장: 의사록 기명날인하실 대의원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직원: 회의 기록을 위해서 방금 찬성 발언이 발의가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인데 아까 13분이 계신데요, 13분이 전원 찬성하신 걸로 기록을 해도 되겠습니까?
- ⇒ “네.” 하는 소리 들림.
- 의 장: 기명날인 하실 대의원 손들어 주십시오.
- 000대의원: 가장 연장자 분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대의원님 중에서, 부회장님들 말고 회장님들 중에 가장 연장자분이. 000대의원님 아니 저기 000대의원님이 가장 연장자이신 거 같습니다.
- 000대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명날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 장: 기타 의견을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대의원: 기타 안건은 아니고요 기타 토의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또 요트계에 그동안 저도 경기인으로서 35년 넘게 선배님 또 후배님 동료 분들과 같이 생활을 해왔고 저는 전업입니다, 직장이고, 또 제 삶의 일부가 요트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새로운 회장님을 이렇게 모시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는 이 시점에서 또 전임 실무부회장으로서 일 년간 일 년여 동안 협회를 나름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일 년간 일 년여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올라오시기 전에 읽으셨던 글, 직전 회장님이 쓰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계신 선배님 대의원님들 어떻게 됐든 뭐 식구들끼리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해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큰 틀에서 포용의 리더십을 좀 발휘를 하셔서 앞으로 20대 박범규 회장님의 집행부가 포용의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개인적인 욕심은 여기서 좀 한 발 더 나아가실 수 있다 라고 하면 회장님 아직 제가 알기로 아직 이.취임식 못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취임식이 아니고 이.취임식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정치적 그런 포용력을 발휘해 주신다고 하면 이 그동안 30년 정도의 굴곡된 비대위가 창설된 이후에 굴곡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역할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 의 장: 알겠음.

- 000대의원: 저도 예전에 17대 회장님 17대인가 18대 박경조 회장님을 모시고 그 다음 정제묵 회장님을 모셨는데 그 때도 정제묵 회장만 취임식만 있고 이·취임식이란 걸 못 했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게 회장님께서 조금 통합하는 차원에서 회장님 취임식을 하시게 된다면 뭐 저는 또 박기철 전 회장이 첫 번째 경기인 출신으로 회장에 당선됐었고요, 그런 걸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의 장: 기타 제안이 없으시면 안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 “네, 없습니다.” 하는 소리 들림.
- 사회자: 회장님의 폐회 선언 있겠습니다.
- 의 장: 그럼 이상으로 2022년 임시대의원총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선언: 17시 10분)